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00

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권칠승·박용갑·박 정

서미화 • 전진숙 • 송옥주

민병덕 • 윤종군 • 한민수

전용기 · 김준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,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%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.

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,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 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8조 및 제49조).

법률 제 호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제4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 해서도 적용하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)	제38조(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)
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	① <u>5</u>
<u>년</u> 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	<u>년</u>
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(자본금	
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	
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)	
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	
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	
지,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	
사용하여야 한다.	
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	② <u>5</u>
<u>년</u> 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	<u>년</u>
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	
하여야 하며, 중소벤처기업부장	
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	
•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	
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	
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	
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	
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	
예기간을 줄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
소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
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
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
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
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
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
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
여야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5. ~ 14. (생 략)
- ②・③ (생 략)

세49조(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
소 등) ①
,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5년</u>
· 5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